

# 자 체 평 가 규 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극동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평가원칙)**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**제3조(평가대상)**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평가영역)**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평가영역을 정한다.

1. 교육·연구 영역
2. 조직·운영 영역
3. 시설·설비 영역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

**제5조(항목별 평가)**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평가시기)** 평가는 2년에 1번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2장 평가기구

**제7조(평가관)**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관을 둔다.

② 평가관은 기획홍보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
③ 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업무 총괄
2. 자체평가 역량향상
3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4.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
④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홍보처에서 담당한다.

**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기획홍보처장(당연직)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입학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처장 6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으로 하며,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자체평가 심사
2. 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
3. 평가위원회 운영

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회의록)**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,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10조(간사)**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  
되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실무위원회)** 자체평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  
다.

###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**제12조(평가계획 수립)** 기획홍보처는 매 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  
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.

**제13조(평가자료 제출)**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는 기획홍보처에 평가자료  
를 제출한다.

**제14조(평가실시)** ① 기획홍보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**제15조(실사)**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과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**제16조(평가결과 보고)** 평가관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 
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